

## 차기 이사회 개최관련 배경 설명

1. 지난 6월 20일 숙명학원 제2차 이사회에서는 총장선출 안건을 상정하여 문시연, 장윤금후보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진행 전 숙명학원 정관 제30조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제척사유발생) 장윤금후보는 이사회장에서 퇴장하였고, 두 후보에 대한 심층면접을 모두 마친 후, 장윤금후보는 총장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문시연 단독 후보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를 실시하였고, 이사 정족수 8인 중 총 7인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나 제척사유가 발생한 장윤금이사를 정족수에서 제외하여 이사의 정족수를 총 7인으로 보고 회의참여 이사 6인이 투표하여 문시연교수가 찬성4표, 반대1표, 기권1표를 얻어 이사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인 4표를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차기 총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하면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해도 이사 정족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3.6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의 ‘학교법인 운영(임원) 업무안내’에 제척사유로 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사선임이 무효가 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숙명학원 정관 제2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7.19일 교육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분쟁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총장선거 결과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명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숙지하시고 이사회가 예정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 18 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 1 항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숙명학원 정관 제 29 조 2 항 “이사회의 의사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숙명학원 정관정관제 30 조 제 1 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의 유권해석상 6.20일 숙명학원 이사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제 2차 이사회에서 선출된 문시연교수가 총장으로 확정되며, 관행에 따라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척사유가 있어도 이사 정족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즉 정족수 8인의 과반수인 5인에 미달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총장선임에 대한 재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또한 교육부 답변이 도착하기전 이사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7.30일 정기이사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총장 임기개시전 이사선임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기시작 1개월 전에 교육부에 이사선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끝.

2024.7.25.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

